

# 건축법시행규칙중 개정령

## ■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의 개정(1988. 2. 24, 대통령령 제12, 403호)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건축물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동 조사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제10조의2).
- 나. 지체부자유자 전용변소의 설치기준을 정함(제27조 제4항).
- 다. 건설부에 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의4).
- 라. 지하층등의 설치를 위해 토지를 지표에서 깊이 5미터이상으로 굽착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시 흙막이판 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함(별표1).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착공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3조의2**중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 제5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치도·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2.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 각 1부(영 제1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3.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영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지 : 법 제9조 및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여부 등
  2. 구조 : 법 제10조 내지 제17조 및 법 제35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 등
  3. 설비 : 법 제22조 · 법 제22조의2 ·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비상급수설비등 건축설비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4. 형태 : 법 제31조 · 법 제39조 · 법 제39조의2 · 법 제40조 · 법 제41조 및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형태제한에 대한 적합여부
  5. 용도 : 법 제32조 · 법 제33조 및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대한 적합여부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 상태에 관한 조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 상태조사서에 의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 조사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각종 평면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평면도를 포함한다) 1부
  2. 승강기등 건축설비에 대하여 건축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설계도서 각 1부

**제16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제19조** 제1항 본문중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 그 거실의 벽”을 “영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벽”으로 한다.

**제23조의2**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용 변소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변소 및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출입문은 유효폭이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각변의 길이는 유효폭이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대변기의 양측에 수직 및 수평의 손잡이를 설치할 것.
-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 (중앙건축위원회) ①법 제44조의2 제1항 및 영 제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3. 기타 건축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별표1]중 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토지의 형질변경 을 요하 는 경우	토지의 지형 평면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종·횡단면 3. 구조물의 위치
		토지의 단면도	임의	1. 축척 2. 단면 상세(구조 물 및 인접 토 지를 포함한다)
	흙막이판구조도 (지 표면에서 깊이 5미 터 이상을 굽착하는 경우에 한한다)	임의	1. 축척 2. 평면 및 단면 3. 공법	

[별지 제5호의2 서식]을 [별지 제5호의3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중

④ 공사감리자란 및 ⑤ 공사시공자란을 각각

④ 공 사 감 리 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	
영 제8조제2항에 의한 상주감리 건축 사보의 성명. 성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 번호	건설업 면허번호	
⑤ 공 사 시 공 자	주소	(전화)	
	건설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배 치기술자의 성명	자격 및 면허번호	

[별지 제11호서식] 제1면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의2 서식] 제67항중  
“(⑤+⑥+⑦+⑧+⑨)”를 “(⑤+⑥+  
⑦+⑧+⑨+⑩)”으로 하며, 동서식  
제70항중 “Mcal/m<sup>2</sup>h°C”를 “  
Mcal/m<sup>2</sup> hr”로 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기를 받았거나 건축허기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관한

[별지 제5호의2]				(앞쪽)	(뒷쪽)
착공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일	
건축주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④ 대지위치					
⑤ 건축허가	번호	일자			
⑥ 연장기간	일자	.	.	.	(일간)
연장사유:					
건축법 제5조 제7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인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건축법 제5조 제7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기간연장을 승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시장·군수·구청장)		년 월 일 ⑦			
30304-12411번 1988. 9. 27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m <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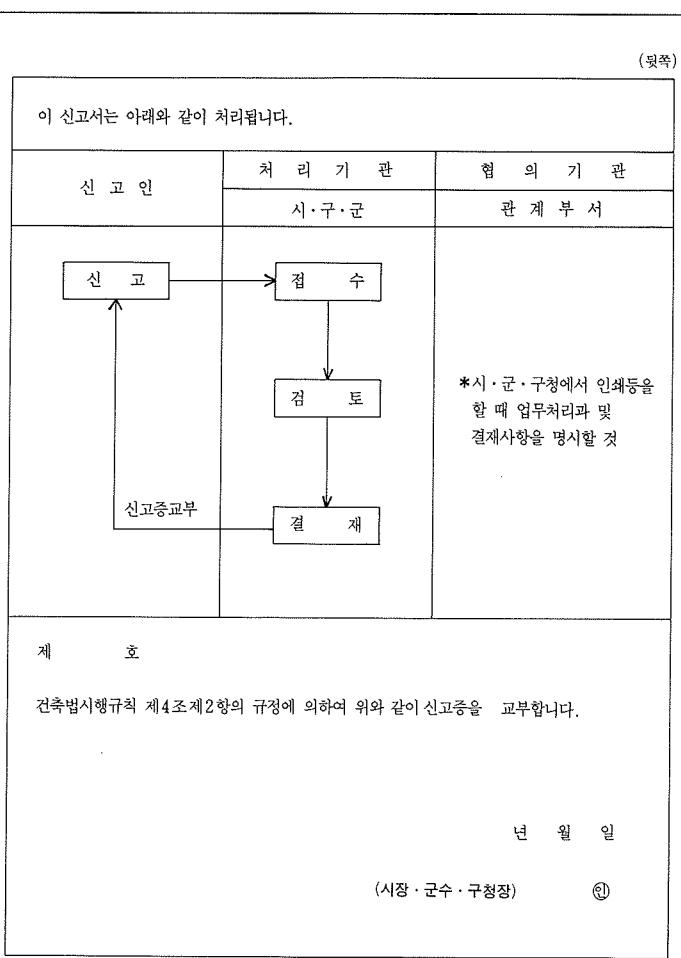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시·군·구	관계부처

```

graph TD
    신청[신청] --> 접수[접수]
    접수 --> 현장사유검토[현장사유검토]
    현장사유검토 --> 결재[결재]
    교부[교부] --> 신청
    
```

\* 시·군·구청에서 인쇄등을  
할 때 업무처리과 및  
결재사항을 명시할 것



〔별지 제11호서식〕		(제1면)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1. 신고내용		처리기간 일	
건축주	(①성명 ③주소)	(②주민등록번호 (전화))	
설계자	(④성명 ⑥사무소명 ⑧주소)	(⑤면허번호 ⑦등록번호 (전화))	제호
공사 감리자	(⑨성명 ⑩사무소명 ⑬주소)	(⑪면허번호 ⑫등록번호 (전화))	제호
공사 시공자	(⑭성명또는 상호 ⑯주소)	(⑮건설업면허번호 (전화))	제호
⑯ 대지위치			
⑯ 허가번호	제호	⑯ 허가일자	
⑰ 착공일자		⑰ 준공일자	
⑲ 준지기간 (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년
※ 검사일자		※ 검사자	⑯
건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준공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신청건축물 동별개요) 2. 설계도서2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한한다)		없음	
30304-07021 민 1988. 9. 27 승인			
190mm × 268mm 신문용지 54g / m <sup>2</sup>			

건축물유지관리상태조사서				
일반현장	①소유자	성명(집합건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②건물명		③소재지	
	④허가일자		⑤준공일자	
	⑥허가기관		⑦입주일자	
	⑧지역		⑨지구	
	⑩유지관리책임자	성명·상호		
주소		(전화)		
준공도면의 종류와 비치여부	⑪도면의 비치장소		⑫도면의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배치도	<input type="checkbox"/> 각종평면도
	⑬비치도면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단면상세도	<input type="checkbox"/> 구조계산서	<input type="checkbox"/> 구조도
		<input type="checkbox"/>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조경도	<input type="checkbox"/> 구조도	
		<input type="checkbox"/> 건축설비도	<input type="checkbox"/> 소방설비도	
		<input type="checkbox"/> 주차장평면도	<input type="checkbox"/> 토지의 지형평면도	

(제 2 면)

구 분		준 공 시	조사 시	증 감 및 사유
대 지	⑪ 대 지 면 적 (m <sup>2</sup> )			
	⑫ 석축 · 옹벽길이와 안전유무			
	⑯ 대지안의 조 경	면 적 (m <sup>2</sup> )		
		식 수 (본수)		
		예술장식품 (개)		
형 태	⑰ 건축선체한 적법유무			
	⑱ 바 닥 면 적 (m <sup>2</sup> )			
	⑲ 건 축 면 적 (m <sup>2</sup> )			
	⑳ 연 면 적 (m <sup>2</sup> )			
	㉑ 전 폐 율 (%)			
	㉒ 용 적 률 (%)			
	㉓ 대지면적 최소한도 (m <sup>2</sup> )			
	㉔ 높 이 제 한 (m)			
	㉕ 대지안의 공지 (m <sup>2</sup> )			
㉖ 기 타				

(제 3 면)

용 도	㉗ 주 용 도			
	㉘ 부 속 용 도			
	㉙ 기 타			
구 조	㉚ 구조내력 지장유무			
	㉛ 방 화 구획 (개소)			
	㉜ 방 화 벽 (개소)			
	㉝ 내화구조 변경유무			
	㉞ 방화구조 변경유무			
	㉟ 대수선이외의 수선사항			
	㉟ 기 타			

(제 4 면)

설 비	㉟ 생 · 난방설비	방 식			
		작동유무			
㉟ 공기조화설비	㉟ 생 · 난방설비	방 식			
		작동유무			
㉟ 승강기	㉟ 승강기	승용 (대)			
		작동유무			
		비상용 (대)			
		작동유무			
㉟ 비상급수설비	㉟ 비상급수설비	방 식			
		용량 (ℓ)			
비	㉟ 금 · 배수설비사용장 유무				
	㉟ 배연설비의 작동유무				
	㉟ 피난계단의 유지 및 폐쇄유무				

(제 5 면)

## ㉛ 조사자 종합의견

건축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의 조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제출자

㉛㉛

귀하